

2024년도 제2회 담양군의회 일반임기제(정책지원관)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4년도 제2회 담양군의회 일반임기제(정책지원관) 공무원 임용 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7월 15일

담양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 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기간	담당업무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정책 지원관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조사 수집·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 발의 조례안 작성 지원 - 의원의 군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에 관련된 의정 활동 지원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5년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 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없음

-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국 적 : 대한민국(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 다음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 임용직급	자 격 요 건
정책지원관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자· 출연기관, 대학교, 대학원, 연구소 등에서 건축, 토목분야 근무경력 ※ <u>책임소재가 명확한 담당자급 이상 경력 인정, 사무보조· 단순지원 등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u>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 및 지방공공기관 통합 공시(www.cleaneye.go.kr) 기준 ** 2024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 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 전임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예시 : 주20시간 근무) 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4. 보수수준

- 근무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및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주40시간 근무
-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신규 임용자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당해 등급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 결정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7급(상당)	66,396	47,157	주40시간(5일)

- ※ 연봉외 급여(각종수당)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 고용노동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심사방법 : 제출서류를 통해 자격요건 서면 심사
- 합격자 결정 :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
 - ※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 재공고 -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 제출서류로 대신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심사대상 : 1차 시험 합격자
- 심사방법 : 개별 면접,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 심사항목 : 5개 항목으로 평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합격자 결정 : 2차시험에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 동점자 발생시 관련분야 경력기간, 연장자 순으로 결정
 - ※ 임용후보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시험결과(점수 및 순위) : 비공개
- 합격자 발표 : 담양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임용시험 공고	2024. 7. 15.(월) ~ 7. 25.(목)	10일 이상 담양군의회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고
원서교부·접수	2024. 7. 23.(화) ~ 7. 25.(목)	방문 또는 우편(3일간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24. 7. 31.(수)	담양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시험	2024. 8. 5.(월)	
최종합격자 발표	2024. 8. 7.(수)	담양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개별 통보)

※ 업무추진상 필요시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담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ouncil.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등의 서식 다운로드받아 사용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7. 23.(화) ~ 7. 25.(목) / 3일간
- 접 수 처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061-380-3531)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익일특급 등기) 접수
 - 방문 접수 : 평일 근무시간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 :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만 인정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합니다.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내에 인사담당자에게 우편발송 사실을 반드시 유선(☎ 061-380-3531)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서류 분실 방지 목적)
- 우편봉투에는 ‘일반임기제(정책지원관) 임용 응시원서 재중’ 문구를 표기하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상당)을 구입하여 동봉하되, 응시원서에 부착 금지
-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유선이나 핸드폰 문자로 통보하오니 연락처(핸드폰번호) 정확히 기재
-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숙지하여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비 서류에 대한 보완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일 이후 우편 도착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이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우편접수 주소 : 우)57339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인사담당자

8. 제출서류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서식) 1부
- ② 응시원서(별지 제2호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7,000원(수입증지)
 - * 응시수수료는 담양군청 민원과에 납부 후 응시원서에 인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등기우편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 대한민국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불가
- ③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1부
 -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제출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④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서식) 1부
- ⑤ 직무수행 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1부
-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1부
-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 1부
- ⑧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별지 제8호서식) 1부
- 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 가능
 - 대학원 이상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⑩ 주민등록 초본 1부 : 병역사항, 개명사항 표시
- ⑪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또는 원본 1부.(사본 제출시 원본 지참)
 - 기관 발급서식이 없을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내역 작성 후 기관장 직인 날인

- 발행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 업무, 상근 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 주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단위 근무 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시 불인정), 구체적으로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력증명서의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 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임.

⑫ **관련분야 경력사항 증빙서류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 발급)
 -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청 발급) 1부**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발급신청시 **과세기간은 관련분야 근무기간(연도) 전체 설정**
-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⑬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자격증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 필)을 첨부하여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 국문 요약 1부.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공고일 이전 발행서류는 가능) 원본으로 제출
-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9. 불합격자의 서류 반환 청구

- 청구기한 : 최종합격일로부터 1개월까지
- 청구방법 : 반환청구서[별지 제9호서식] 작성 제출
[우편 또는 팩스(061-380-3590) 또는 방문 제출]
- ※ 청구기한 내 반환 미청구 시 채용서류는 파기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이 불분명한 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작성내용이 증빙서류와 다른 경우 전형결과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기재로 불합격처리 또는 임용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서류 발급 및 사실 관계 확인 후 응시원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 단, 최종합격자 발표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이 경우 당초 원서접수 기간 중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별도 서류 제출없이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합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임용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전부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담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ouncil.go.kr>) ‘고시/공고’란에 공지 및 응시자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인사담당자(☎061-380-3531)